



기 관 명

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

문서번호 : 부가가치세과 -

○ 수신자 0000상회 대표자 김국세 귀하

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귀 사업장의 20 . 기~20 . 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.

20 . . .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, 기한 내 제출 시 신속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 한일인 20 . . . 이후 7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.

※ 검토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위 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및 관련 세금(종합소득세, 법인세 등)을 수정신고·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신고내용 검토결과 문제점

○ 제출할 자료

※ 해명자료는 우편이나 팩스, 전자메일, 홈택스(상단 메뉴바에서 「증명·등록·신청」 > 「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」 > 「일반신청/결과조회」 > 「국세 민원 서류 찾기」에서 “해명자료” 검색) 중 선택 제출 가능

년 월 일

기 관 장

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 :)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,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·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(전화 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